

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4. 1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8. 4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'98. 4. 17 (제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
- 나. 개정사유
 - 능률적인 군정 수행과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코자함.
- 다. 주요내용
 - 간 사 장 → 간사와 서기 (안 제6조)
 - 기획계장 → 업무담당계장 (안 제6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- 동 조례 개정안은 능률적인 군정수행과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"간사장"을 "간사와 서기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기획계장"을 "업무담당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(간사장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, 서기는 소속 직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조 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<u>업무담당계장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